

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수규정

제	정	2012. 01. 25
개	정	2012. 05. 30
개	정	2015. 05. 18
개	정	2019. 02. 21
개	정	2020. 12. 22
개	정	2022. 01. 25
개	정	2022. 09. 20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「정관」 제10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 및 연구원 등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산학협력단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1. “연봉제”란 보수를 연단위의 일정금액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.
2. “보수”라 함은 기본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3. “기본급”이라 함은 직원 기본연봉표상에서 연차연봉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.
4. “제수당”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복리후생증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5. “성과급”이라 함은 산학협력단 경영성과 기여도와 근무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4조(보수체계)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장 보 수

제5조(직원보수) ① 직원의 보수는 별지 제1호 직원 기본연봉표상의 금액과 별지 제2호 제수당 지급기준표(이하 “별지2”라 한다)상의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, 매 회계년도별로 산학협력단장이 책정한다.

② 성과급은 산학협력단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 단, 성과급의 지급은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하되, 그

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 성과급은 경영성과의 여부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한다.

제6조(보수계산 및 통지) ① 직원의 연봉 계산 기준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, 월 보수 계산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①항에 의해 계산된 직원별 보수총액을 매년 보수책정 직후 30일 이내(성과급은 지급금 확정 후 10일 이내)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원 연봉통지문으로 고지한다. 단, 연봉통지문의 고지에도 불구하고, 직원의 인사 및 개인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.

③ 신규임용, 휴직, 복직, 면직,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단,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사망 또는 면직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

제7조(보수지급) ① 직원 및 연구원의 월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<개정 2020.12.22.>

②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지정하는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.

제8조(보수지급의 제한) 직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「정관」, 「인사규정」 및 「복무규칙」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보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(제수당의 종류) ① 직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, 직급수당, 급량비,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2.05.30., 2015.05.18., 2019.02.21., 2022.01.25.>

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산학협력단 「인사규정」 제3조에 의한 “전문직” 과 “연구관리직” 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2.21.>

제9조의 2(직책수당) <신설 2012.05.30.> ① 직원이 직책을 부여 받은 경우 별지2에서 정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아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직원이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직책수당은 아주대학교 보수규정에 근거한 학교의 책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③ 직책을 겸임할 경우에는 최상위 직책의 직책수당만을 지급한다.

제9조의 3(직급수당) 직원이 일정한 직급에 임용되는 경우 직급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은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2.01.25.>

제10조(급량비) 직원에게는 별지2에서 정한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가족수당) <삭제 2019.02.21.>

제12조(자녀학비보조수당) ① 직원(외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)이 국내 중·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(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)가 있는 경우 3월, 6월, 9월, 12월에 별지2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자녀가 외국의 중·고등학교, 외국인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국·공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. 단,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.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
2. 자녀가 재학 중 퇴학, 휴학 등 신분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3조(육아휴직수당) <삭제 2015.05.18.>

제14조(기타사항) 특정사업 계약직과 연구원의 보수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퇴 직 급 여

제15조(퇴직급여제도) ① 직원의 퇴직급여는 「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」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며, 이에 따른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② ①항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직원은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6조(보충규정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<신설 2019.02.21.>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9.02.21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1552호 : 2022.01.25.>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3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1183: 2022.09.20.>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〈산학협력단 보수규정〉 (별지 제3-1호 서식)

연 봉 통 지 문

○○○ 선생님

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전을 위한 선생님의 열정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0__학년도에도 우리 산학협력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생님의 직무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, 선생님의 20__학년도 기본연봉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내역별	소속	직급	20__학년도 승급연차	보수(천원)
기본연봉				

20__학년도 직원보수는 전년대비로 총인상률 __%를 적용하였으며 다만, 직급상한(최대 연차) 상태인 경우에는 직급 내 변동분을 제외한 순수인상률 __%를 적용하였습니다.

〈참고사항〉

1. 기본연봉의 지급기간은 20__년 3월 ~ 20__년 2월을 말하며, 기간 중 승진·휴직·면직 및 연차 승급 등의 신상 변경 시에는 지급여부 및 금액이 변경됩니다.
2. 급량비,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제 수당은 제 기준별 해당직원에게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.
3. '성과급'은 경영성과 기여도와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〈유의사항〉

1. 상기 연봉은 각 개인의 비밀사항이오니 정보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

직원성과급 통지문

○○○ 선생님

지난 1년간 산학협력단 사업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, 선생님의 20__학년도 성과급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성과급은 __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됩니다.

성과내역별	지급액(천원)
기술이전기여 성과급	
단 장 추 천 급	
계	

<직원성과급 구성 및 책정기준>

1. 기술이전기여 성과급: 기술이전촉진법, 발명진흥법 및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각 연도별 특허등록, 기술이전사업 실적결과에 따라 지식재산권심의회위원회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책정
2. 단장추천급: 산학협력단 경영성과 및 발전을 위한 기여 등을 참고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책정

<유의사항>

1. 상기 연봉은 각 개인의 비밀사항이오니 정보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